

보도시점 2024. 3. 11.(월) 조간 배포 2024. 3. 8.(금) 15:00

## 금융위·금감원, 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MMoU 가입

- '24.3.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MoU에 가입
- 홍콩·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0개국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감독 및 검사 업무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지난 3월 8일 금융위·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 이하 '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Multilateral) MoU(MMoU)에 가입하였다.

금융위·금감원은 금번 감독부문에 관한 협력 이전에도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EMMoU(Enhanced MMoU)에도 가입하여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올해 2월 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 사무처에 금번 MMoU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월 21일까지 APRC 회원인 각국의 감독당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APRC 총회에서 아젠다로 논의된 후 3월 8일 금융위·금감원이 APRC의 MMoU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최종 가입하게 되었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금융위·금감원이 가입한 MMoU에는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감독당국이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직 미가입한 11 개국의 감독당국들이 향후 MMoU 체결 시 협력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몽고, 태국, 방글라데시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참고] IOSCO/APRC 개요 및 MMoU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정종헌 (02-2100-265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서재완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이동규 (02-3145-7570)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3145-7890)
		담당자	팀 장	이동혁 (02-3145-7170)





## IOSCO/APRC 개요 및 MMoU 주요 내용

## 🚺 IOSCO 및 APRC 개요

- □ (IOSCO) '83년 설립된 IOSCO는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이상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7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
  - \* 우리나라(금융위, 금감원)는 '99년 정회원으로 가입(舊증감원은 '83년 가입)
  - (목 적)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의 시행·평가, 회원국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을 통한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
- □ (APRC) IOSCO의 4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한국 등 15개국 참여로 '00년부터 활동하여, 총 22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
  - (목 적) 아-태지역 회원간 관심사항 및 정보 교환, IOSCO 집행위원회 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개진

## **2** APRC MMoU 주요 내용

- □ (협력범위)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의 업무위탁,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감독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감독업무 수행 지원
- □ (인허가 절차)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제재조치 내역, 경영현황 및 결격사유 등 관련 심사국의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 □ (상시감시) 사전에 상호 합의된 사항, 개인(법인) 등에 대한 제재, 징계, 인허가(취소) 등 상시감시 관련 정보 요청 및 제공
- □ (임점검사) 감독기관 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에 상대국 소재 점포 등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
- □ (자금세탁방지) 요청을 받는 경우 국내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협력·협조를 위해 노력